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0. 1.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12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5일
- 라. 상정일자 :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4년 9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가. 제안이유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도로법」 제76조 ➡ 제91조(안 제2조제1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안 제6조의5)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금 재원의 조성 근거인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안전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 7. 15)되고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2014.7.17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전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2.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시 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 호
----------	--------

제출연월일 : 2014.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도로법」 제76조 ➡ 제91조(안 제2조제1호)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안 제6조의5)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로법」
-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불필요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7.17~8.6, 20일간)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p> <p>2. (생략)</p>	<p>제2조(기금의 재원) ----- ----- -----.</p> <p>1. 「도로법」 제91조에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④ (생략)</p> <p><u>〈신설〉</u></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p> <p>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u>〈신설〉</u></p>	<p>제6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p>

현행	개정안
	<p><u>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② <u>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③ <u>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u></p>